



제400회국회(정기회)
제9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득평가액 산정 시 보훈급여 제외〉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149호)

2022.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소득평가액 산정 시 보훈급여 제외	2

I. 개요

1.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14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2. 4. 7.

(3) 회 부 일 : 2022. 4. 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함.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등은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은 생계급여가 낮게 책정되거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에 헌신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보훈급여금 등을 포기하거나 생계급여 수급권을 포기하는 선택의 기로에 처하게 되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을 이전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제4호).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소득평가액 산정 시 보훈급여 제외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기초생활급여의 지급기준으로 사용되는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 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이전소득</u>	4. <u>이전소득. 다만, 「국가유공자 등</u>

②・③ (생략)	<u>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u>「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 , <u>「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u> ,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에 따라 지급되는 보 훈급여금 또는 수당은 제외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판단 및 급여 산정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소득인정액에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높아짐에 따라 수급권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감소할 수 있는바,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은 ‘소득인정액’이 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발생하므로,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 수급권자에서 탈락할 수 있음.

* 급여 선정기준은 가구 규모별로 매년 산정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2022년 1인 가구 194만원)’의 일정 비율로 정의되고, 그 비율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로 하고 있음.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므로¹⁾, 소득인정액이 증가할수록 수급액이 감소함.

□ 현재 보훈대상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공제 현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²⁾ 제4호부터 제6호에 따라 생활이 곤란한 보훈대상자에 지원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참전명예수당 등의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 및 상이군경 본인·유족에 대한 보상금과, 무공영예수당 · 6·25전몰자녀수당 및 4·19혁명공로수당 등 일부 보훈급여는 이를 공제하지 않고 소득인정액에 포함하고 있음.

< 2022년 보훈급여금 중 소득인정액 제외 현황 >

구분	법률 근거	보훈급여명	지급대상	지급금액(월)	공제액(기준)
제외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대상자법	생활조정수당	저소득 국가(독립)유공자 · 본인·유족	22~33.6만원	전액
	독립유공자법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저소득 독립유공자 손자녀	47.8만원	
	참전유공자법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35만원	전액 (1인가구 중위소득 20%(38.8만원) 이하)
	고엽제법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3~ 188.9만원	38.7만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 부가급여액)
포함	독립유공자법 보훈대상자법	보상금	독립유공자 및 상이군경의 본인·유족	52.1~ 332.3만원	없음
	국가유공자법	무공영예수당	무공수훈자	41~43만원	
		6·25전몰자녀수당	6·25 전사자 자녀	36.4~145.6만원	
		4·19혁명공로 수당	4·19혁명공로 건국포장자	36.1만원	

주: 국가유공자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자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자료: 보건복지부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 3. (생 략)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제1호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중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7. ~ 12. (생 략)

- 참고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이고,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실제소득’에서 “①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②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③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법 제6조의3제1항)”³⁾을 감하여 산출하는데, 시행령 5조의2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는 이러한 감액 내역으로 위 표와 같이 생활조정수당 등의 일부 보훈 급여만 포함하고 있는 것임.

<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출 산식 >

소득 인정액	구분	산식
	소득평가액 (제6조의3제1항)	실제소득 - <u>장애·질병·양육 등 가구특성별 지출비용</u> - <u>근로유인요인</u> - <u>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u>
	재산의 소득환산액 (제6조의3제2항)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 예우하고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생략)

4)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개정안과 같이 보훈급여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이 줄어들거나 급여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득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근로소득 및 다른 공적 이전소득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행법상의 기본원칙이고⁵⁾, 현행법 제6조의3에서 소득인정액의 감액요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또는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과, 개정안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요인은 성질상 다소 이질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서 소득인정액에 대한 신규 감액요인을 규정하기 보다는 이전소득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측면이 있음.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보훈대상자 예우 요인’을 고려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1834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급여의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의 산정시 이미 인정되고 있는 범위를 넘어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을 추가로 제외하는 것은 기초생활제도의 급여원칙, 타 급여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음.
- (기획재정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신의 소득·재산과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이 생계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국가가 지원하는 공적이전 소득은 원칙상 모두 소득으로 포함하여 판단 중이고, 일부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산정 제외시 국민연금, 실업급여, 산재급여 등 他 공적 급여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 (법제처) 관련 부처 의견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원칙 및 기타 공적 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입법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임⁶⁾.

문 의 처
02)6788-5497

6) 참고로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법제처 주관으로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거쳤고,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정부의견을 국회 심의과정에 전달하기로 합의함.

【참고】	2022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단위: 천원, 자료: 국가보훈처)
-------------	--------------------------	---------------------

대 상 별			보상금	간호수당	중상이 부가수당	합 계
애 국 지 사	건국훈장	1~3등급	6,489			6,489
		4등급	3,455			3,455
		5등급	2,732			2,732
	건국포장		1,957			1,957
	대통령 표창		1,286			1,286
특별예우금			1~3등급 2,325, 4등급 1,920, 5등급 1,725, 건국포장 1,575, 대통령표창 1,575			
애 지 유 족	건국훈장	1~3등급 배우자	2,875			2,875
		4등급 배우자	2,118			2,118
		5등급 배우자	1,724			1,724
	건국포장	배우자	1,211			1,211
	대통령표창	배우자	819			819
	건국훈장	1~3등급 유족	2,489			2,489
		4등급 유족	2,074			2,074
		5등급 유족	1,684			1,684
건국포장	유족	1,202			1,202	
대통령표창	유족	803			803	
상 이 자	1급 1항		3,323	2,763	2,492	8,578
	1급 2항		3,134	2,659	1,724	7,517
	1급 3항		3,000	2,556	1,050	6,606
	2급		2,667	883		3,550
	3급		2,493			2,493
	4급		2,092			2,092
	5급		1,733			1,733
	6급 1항		1,581			1,581
	6급 2항		1,455			1,455
	6급 3항		977			977
	7급		521			521
	해당시		전상수당 90, 고령수당 97			
재일학도 의용군인			1,455			1,455
4.19혁명공로자			361			361
유 족	배우자	전몰.순직	1,751			1,751
		상이1~5급	1,518			1,518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557			557
	부모	전몰.순직	1,720			1,720
		상이1~5급	1,493			1,493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528			528

	자녀	전물.순직	2,030			2,030
		상이1 ~ 5급	1,762			1,762
		6급비상야(7급상야)사망	804			804
	해당시		고령수당 97(배우자 고령 149), 무의탁 274, 2인 사망 274(1인 추가시 274가산) 미성년자녀 양육 1인 50, 2인 185(1인 추가시 185) 미성년제매 양육 1인 100, 2인 370(1인 추가시 370)			
기 타	6.25 자 녀 수 당		제적 1,387 → 1,456(제적 위로가산금 80), 승계 1,180 → 1,239, 신규대상 347 → 364(생계곤란 추가 지원 114)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고도1,010 → 1,061, 중등도745 → 782, 경도489 → 513			
	고엽제 2세 환자수당		고도1,799 → 1,889, 중등도1,398 → 1,468, 경도1,123 → 1,179			
	무공영예수당		인현 410, 화랑 415, 충무 420, 을지 425, 태극 430			
	참전명예수당		350			
	생활조정수당		가족 3인이하 : 220/252/283, 4인이상 : 273/305/336			